## 자기계발지원규정

제정일자: 2006.03.01. 1차 개정: 2009.09.07. 2차 개정: 2011.01.01. 3차 개정: 2015.06.19. 4차 개정: 2018.07.10.



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(주)아이엠비씨(이하 '회사'라 함)의 임직원에 대한 자기계발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자기계발비용 발생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및 일반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며, 병가 또는 휴직 중인자는 제외한다.

**제3조 (주관부서)** 임직원의 자기계발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, 인사담당부 서장은 이 규정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있다.

**제4조 (지원금액)** ① 상기 제2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지출한 자기계발비용에 대하여 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.

- ② 중도 입사, 병가, 휴직 등의 경우에는 전항의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원한다. 이 경우 20일 이상 근무한 월에 한한다.
- ③ 자기계발비용은 년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. 단, 월 기준으로 초과 사용한 자가 퇴직이나 휴직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한다.
- ④ 지원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, 미사용 금액의 익년 이월은 불가하다.

제5조 (지원항목) 자기계발비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수강/ 수업료: 학원수강료 (어학, 음악, 자격증, 면허증 등), 학교 수업료 등
- 2. 체력단련비: 스포츠센터 등록비 (헬스, 골프, 요가, 수영, 스포츠댄스 등), 스포츠 강습료, 체력단련을 위한 물품구매비
- 3. 문화활동비: 문화콘텐츠 관람 및 구입비용 (공연, 연극, 뮤지컬, 영화, 스포츠, 음반, DVD 등)
- 4. IT제품비: 컴퓨터, 노트북, 스마트기기 등 IT제품 구매비
- 5. 기타 주관부서가 자기계발항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 (지원제외항목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기계발비로 지원하지 아니한다.

- 1. 해외여행 중 해당국 거주의 친지방문 또는 신혼여행 등 자기계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
- 2. 국내여행 중 친지방문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단순 교통비/ 숙박비 정산
- 3. 의류, 신발, 모자 등 생활용품
- 4. TV, 냉장고, 에어컨, 오디오, 라디오 등 일반 가전제품
- 5. 지출한 자기계발비용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
- 6. 기타 주관부서가 자기계발항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 (신청 및 지급) ① 자기계발비용을 신청코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 발생비용을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 중 하나를 회사소정의 증빙영수증 양식에 부착하여 당해년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세금계산서
- 2. 신용카드전표
- 3. 현금매출영수증
- 4. 거래명세서
- 5. Invoice
- ② 주관부서는 전항의 신청서를 참고하여 해당금액을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.



제8조 (검토 및 심사) ① 주관부서는 증빙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주관부서는 허위로 자기계발비용을 지원 받은 직원에 대하여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, 사규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.

제9조 (기타사항) ① 자기계발지원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자기계발지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6.1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7.10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